
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 구비사항

구분	문서 / 서류 명	내 용	관 련 법 령	비 고
산업안전보건법 / 시행령 / 시행규칙				
1	노동부/공단 관련 문서철	산안법 관련 지시 / 조치결과	—	기본 비치서류
2	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/ 교육이수증	50인 이상 (1차금속 제조업 등 22개 업종)	법 제15조	신규/보수 각 6H. 2년마다 보수교육.
3	관리감독자 선임서 / 교육이수증	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직원을 지휘·감독	법 제16조	정기(연 16H↑). 전문화/관리담당자 양성 교육시 해당 시간 면제.
4	안전관리자 선임서 / 교육이수증	50인 이상 (1차금속 제조업 등 모든 업종)	법 제17조	수급인은 50인↓시 도급인에 통합, 50인↑시 별도 선임.
5	안전관리자 업무일지	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/ 유지	법 제17조	위탁시 위탁업체 상태보고서철.
6	보건관리자 선임서 / 교육이수증	50인 이상 (1차금속 제조업 등 모든 업종)	법 제18조	안전관리자와 동일 하게 적용.
7	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서 / 교육이수증	20인↑~50인↓ (제조업, 임업 등 5개 업종)	법 제19조	보수교육 8H. 법 제29조 참조.
8	안전/보건관리위탁 업무계약서	안전 / 보건관리 업무위탁 내용	법 제21조	규칙 별지 제5호.
9	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	100인 이상	법 제24조	일부 업종 50인↑.
10	안전보건관리규정	100인 이상	법 제25조	100인↑시 30일↓.
11	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결과	사무 / 판매직(반기 6H↑), 기타(반기 12H↑), 채용시(8H↑), 작업변경시(2H↑), 특별교육(16H↑)	법 제29조	특별교육시 채용, 작업 변경시 교육 대체. 무사고시 차년도는 50%면제.
12	법령요지	사업장관련 산안법령 /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내용	법 제34조	근로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.
13	위험성평가 결과	실시규정 / 결과표 / 개선결과 등	법 제36조	고시 2023-19호 / 중처법 대비.
14	안전보건표지	금지8종, 경고15종, 지시9종, 안내8종 등	법 제37조	외국인 채용시 해당 모국어로 작성.
15	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	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, 그 후 3년마다 실시	법 제39조	기준규칙 제656 ~ 662조 / 고시 제 2020-12호 참조.
16	유해위험방지계획서	업종대상(13개) / 설비대상(5종)	법 제42조	고시 제2023-50호.
17	공정안전보고서(PSM)	누출·화재·폭발우려 설비 보유시, 규정량 이상 유해위험 물질 취급시	법 제43조	고시 제2023-21호.
18	중대재해 발생 보고서	개요/피해상황, 조치/전망 등	법 제54조	지방고용노동관서.
19	산재에 관한 통계	연도, 형태, 중대·일반산재 등	법 제17조	안전업무 관계자
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 구비사항

구분	문 서 명	내 용	관 련 법 령	비 고
20	산업재해 조사표	사망자, 3일 이상 휴업 필요한 부상/질병자 발생시 1개월 이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	법 제57조	요양신청서 사본 + 재발방지계획 첨부시 대체 가능.
21	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	도급사업장에서 수급근로자 포함 100인 이상시	법 제62조	합계 100인↓시 미지정 가능.
22	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	작업시작시간, 연락방법, 위험성 평가 실시, 대피방법 등 논의	법 제64조	월1회↑ 회의, 기록 유지.
23	도급사업 순회점검일지	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시정요구 가능	법 제64조	2일에 1회↑ 점검 / 기록 유지.
24	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	점검반 구성 : 도급인 + 수급인 + 근로자 각 1인	법 제64조	분기 1회 이상 점검 / 기록유지.
25	유해·위험기계기구설비 대장	안전인증, 자율안전, 안전검사 대상 등 명시	법 제84조 ~ 제93조	위험성평가, 설비 관리를 위해 준비.
26	MSDS 관리철 / 대상물질 관리요령	취급 사업주가 MSDS / 관리요령 게시	법 제114조	제품명, 위험성, 주의사항 등.
27	MSDS 대상물질 용기 경고표시	고시 제2023-9호 내용 적용	법 제115조	산안법 시행규칙 제170조 3항.
28	작업환경측정 결과	최초 30일내, 이후 반기 1회 이상	법 제125조	규칙 제186조.
29	일반 건강검진 결과	사무직 2년1회 / 기타 1년1회 이상	법 제129조	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인정
30	특수,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	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의 종사자 및 종사할 근로자의 적합성평가	법 제130조	시행규칙 별표 22.
31	특별/허가/금지물질 취급일지	근로자명, 물질명, 사용량, 작업 내용, 보호구, 사고내용 등	법 제164조	규칙 제439 / 468 / 509조
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기규)				
1	보호구 지급대장	안전모, 안전대 등 10종	기규 제32조	충분한 수량 확보.
2	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	지게차, 등	기규 제38조	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방지 / 별표 4 참조
3	화학설비/부속설비 작업계획서	반응기, 혼합조, 열교환기 등	기규 제38조	별표 7 참조.
4	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	크레인, 양중기 등	기규 제38조	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방지 / 별표 4 참조
고용노동부 고시 / 예규 등				
1	위험성평가 사업주 / 담당자 교육 이수증	사업주 교육(2H / 무료) 담당자 교육(2일 / 유료)	고시 2023-19호	위험성평가 인증 희망시 필수.
2	정밀안전점검 결과	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점검	예규 200호	신규 위탁계약 및 산재발생 사업장.

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비 서류

중대재해처벌법 핵심



[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확보]



법 제4조 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)

시행령 제4조 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)

시행령 제5조 (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)

시행령 항목	항목별 준비사항	적용조항
1.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	▶ 사업장 현황 고려한 구체적 목표 및 방침	시행령 4조
2. 안전·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운영(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시)	▶ 상시근로자 수에 맞는 조직·업무 분장표	
3.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절차 마련, 점검에 따른 필요한 조치	▶ 이전 위험성평가 검토·보완 또는 신설 규정 적용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반기점검	
4. 재해예방 위한 안전·보건 관련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 및 유해·위험요인 개선 위한 예산 편성·집행	▶ 각 항목별 예산편성 현황, 집행예산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및 보완	
5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여건보장 및 반기평가 (권한·예산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)	▶ 관계자에 대한 선임서, 예산배분, 직무교육 실시 및 반기평가	
6. 산안법에 따른 안전·보건관리자 등 배치, 업무 수행시간 보장	▶ 안전·보건 관계관 선임, 적정 근무시간 보장	
7.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, 이행여부 반기점검	▶ 위험성평가와 연계, 종사자 의견청취, 개선 사항 검토 및 반기점검	
8.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반기점검	▶ 유해위험요인 고려한 비상조치 매뉴얼 작성, 반기점검	
9. 도급·용역·위탁시 수급업체 평가기준 및 절차, 안전·보건 관리비용의 기준 설정 및 반기점검	▶ 수급업체 선정기준, 안전 및 보건관리비용 등에 관한 기준 수립 및 반기점검	
10. 안전·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반기점검	▶ 안전·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결과 및 반기점검	시행령 5조
11. 의무 미 이행시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 집행 등 의무 이행 조치	▶ 의무 미 이행시 인력 추가배치, 예산 추가 편성	
12. 유해·위험작업에 따른 안전·보건 교육, 실시 여부에 대한 반기점검	▶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 및 반기점검	
13.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 지시,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	▶ 미실시 교육내용 식별시 조치	

(주)안전법인 한결 주요업무 소개

1 노동부(공단) 중처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수행

구 분	규 모	지원 횟수	비 고
내 용	5인 ~ 299인 사업장	연간 5회 방문	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신청서 발송
효 과	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(경영책임자) 부담 경감 (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)		

2 노동부(공단)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수행

구 분	모기업	중소기업 (최대 2천만원 지원)
내 용	100인 이상 사업장	모기업의 사내·외 협력업체 + 관련없는 지역 중소기업
비 고	노동부+모기업이 각종 컨설팅 및 안전물품 지원 (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)	

3 안전관리 위탁 / 안전보건교육

구 분	규 모	지원 횟수	비 고
안전관리자	50인 이상	월 2회 정기방문	도급업체는 수급업체 포함 선임
안전보건관리담당자	20인~49인		도급업체 및 수급업체 별도 선임
회 원 사	5인 이상	월 1회 정기방문	안전보건업무 자문 / 지원

4 위험성평가 및 인정 지원

구 분	위험성평가	위험성평가 인정
대 상	5인이상 모든 사업장	50인 이하 사업장
비 고	위험성평가 인증 혜택 ⇨ 세금감면 +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+ 재정지원과 연관	

5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탁

①컨베이어 ②파(분)쇄기 ③혼합기 ④식품가공용기계(파분쇄기, 절단기, 혼합기) 등

6 제조업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위탁

- ①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 : 건설물·기계·설비 설치,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변경시
 ② 용해로, 화학/건조설비, 가스집합 용접장치, 국소배기장치 등의 설치,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변경시

7 ISO 450001 / KOSHA-MS 인정 지원

8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 (연도별 예산에 따른 변동 / 조정 가능)

- ①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: 10억 한도(금리 1.5%, 3년 거치 / 7년 분할상환)
 ② 클린사업(50인↓) : 3천만원 한도(자부담 20~30%)
 * 프레스, 크레인, 로봇, 사출기, 지게차, 리프트 등의 안전장치 및 소음방지장치 등
 ③ 디딤돌사업(50인↓) : 작업환경측정(40~100만원),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(90~100% 지원)
 ④ 안전투자혁신사업(자부담 50%) : 위험기계교체(최대 7천만원), 위험공정 개선(최대 1억원)

9 기타 안전·보건 관련 제반업무 수행 및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